

EU 통신법과 가맹국내 국내법화 추진 동향

김방룡

한국전자통신연구원

prkim@etri.re.kr

The Evaluation on EU 's Telecommunications Law and Trends of the National Lawmaking in the Member Nations

Pang-Ryong Kim

ETRI

요 약

EU가 채택한 「전자통신 규제 패키지」는 종래의 정보통신 산업구조가 수직통합형에서 인터넷 기술발전에 따라 물리적인 네트워크, 전송서비스, 컨텐츠로 충별로 세분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규제체계로 평가할 수 있다. EU는 가맹 국가에 대해 이 법령을 2003년 7월까지 국내법에 적용하도록 권고하였으나, 15개 가맹국 가운데 이 기한까지 국내법화를 실시한 나라는 5개국에 불과한 실정으로, 여기에 대한 유럽 위원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우리나라도 이 법령의 문제점을 감안하면서 현실에 맞는 통신·방송 융합을 위한 규제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

I. 서 론

유럽연합은 1980년대 후반부터 통신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경쟁을 도입하기 시작하였으며, 1998년 1월부터는 일부 가맹국을 제외하고는 음성통신 전 분야에서 신규진입의 자유화가 이루어졌다[1]. 이 조치로 EU 통신시장에 본격적인 경쟁체계가 도입되면서 현저한 기술진보와 가격인하로 통신시장이 급속한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EU의 규제체계는 최근까지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1998년 이후 시장경쟁 촉진을 위한 개별 지침이 산발적으로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EU 가맹국들은 통신과 방송의 융합에 대응하는 동시에 규제체계를 보다 단순화하기로 합의하고, 통신 산업에 대한 규제구조를 포괄적으로 재검토했다. 그 결과, 새로운 규제 틀로 채택된 것이 「전자통신 기반 및 관련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규제 틀(New Regulatory Framework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and Associated Services)」인데, 여기에서는 이를 「전자통신 규제 패키지」로 표현하기로 한다.

「전자통신 규제 패키지」는 각 가맹국 내에서 국내 적용을 위한 입법조치, 환연하면 국내법화를 통해 비로소 실효성을 띠게 된다. 또한 이 패키지의 출현은 역내 사업자들의 활발한 사업전개와 그에 따른 시장의 급속한 진전을 그 배경으로 채택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역내에 신속하고 통일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유럽 위원회에서는 국내법화를 위한 기한을 설정하고, 가맹국에 그 준수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유럽위원회의 의도와는 달리 국내법화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가맹국이 속출하여, 국내법화 기한을 준수한 일부 가맹국과 규제 수준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서 「전자통신규제 패키지」의 존재 의의가 위협을 받는 사태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 EU 위원회에서는 국내법화

기한을 지키지 못한 가맹국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제소를 포함한 엄격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본 고의 전반부에서는 EU 통신법을 둘러싸고 이 법령이 형성된 과정과 법령의 주요 내용, 그리고 이 법령이 지니고 있는 의의 및 과제를 중심으로 이를 평가하고자 한다. 논문의 후반부에서는 EU 가맹국들이 EU 통신법을 어느 정도 국내법으로 수용하고 있는지 그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의 적용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II. EU 통신법의 형성과정 및 의의

1. 형성 과정

EU에서는 이미 계획된 통신시장 개방일정에 따라 1998년 1월 1일부터 일부 가맹국을 제외하고 음성통신을 포함한 모든 전기통신부문에서 자유화가 이루어졌다[1]. EU의 통신규제에 대한 기본원칙은 통신서비스와 기기시장의 공동발전을 위하여 제안된 1987년의 Green Paper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3가지의 기본원칙은 EC조약 제90조를 근거로 하고 있는 독점분야의 자유화, EC조약 제100 a조를 근거로 하고 있는 유럽시장의 조화화, EC조약 제85조와 제86조 및 합병규칙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경쟁규칙의 적용이다[2].

E U에서 시행된 1998년 자유화 이후의 규제체계는 1998년 규제 패키지(The 1998 Regulatory Package)라고 불리는 약 20개에 이르는 개별 지침으로 서비스별로 각 시장을 규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유럽 각국이 그 전부터 추진해온 경쟁활성화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면서 경쟁 도입 초기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규제패키지를 활성화된 시장상황에 맞추어 수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1999년 11월에는 The 1999 Communications Review가 발표되면서 규제체계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여기서는 현재까지의 서비스별 규